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0회 제2차 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3. 11.

박 왕 규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박왕규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 산업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.

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라 4차산업 육성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7조에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
-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,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【박왕규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 번호	00923143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1. 3.

발의자: 박왕규, 이선주, 고명욱,
서보영, 김장관, 강한곤

1. 제안이유

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산업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)
- 나. 구청장이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 ·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구청장이 4차산업 육성 기업을 선정하도록 함(안 제6조)
- 마. 선정된 4차산업 육성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7조)

바.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,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3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1

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4차산업 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.

1. 사물인터넷(IoT): 가전제품, 모바일 장비,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
2. 정보통신기술(ICT)융복합: 정보통신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·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
3. 빅데이터: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(수집, 생성, 저장, 조합, 분석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)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
4. 가상현실(VR): 가상현실(VR)은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,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기술
5. 증강현실(AR):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

6. 인공지능(AI):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, 지각능력,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
7. 삼차원프린팅산업: 「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
8. 항공우주산업: 「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
9. 그 밖에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육성·지원하기로 한 분야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달서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
 2. 4차산업 기업 현황 및 성장 전망
 3.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 방향 및 시책
 4. 4차산업혁명 교육·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
 5. 4차산업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4차산업 육성 기업의 선정)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4차산업 기업 중에서 육성할 기업을 선정 할 수 있다.

1.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
2.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
3. 기술·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

② 4차산업 육성 기업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4차산업 육성 기업의 지원)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학 및 관련 기관·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1. 연구개발비의 지원

2.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
 3.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
 4.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4차산업 활성화 지원) ①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,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· 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 · 규칙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 및 그 운영 · 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· 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 · 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 ·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產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 · 아동 · 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· 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 · 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 · 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농림 · 수산 · 상공업 등 산업 진흥

가. 못 · 늚지 · 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나. 농산물 · 임산물 · 축산물 ·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
다. 농업자재의 관리

라. 복합영농의 운영 · 지도

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· 지도

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사. 공유림 관리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자. 가축전염병 예방

차. 지역산업의 육성 · 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· 지원

하.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 · 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 · 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 · 군도(郡道) · 구도(區道)의 신설 · 개선 · 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 ·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
의 지정 및 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
치 및 관리

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거. 주차장 ·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 교육 · 체육 · 문화 · 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 · 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및 이에 준
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· 운영 · 지도

나. 도서관 · 운동장 · 광장 · 체육관 · 박물관 · 공연장 · 미술관 ·
음악당 등 공공교육 · 체육 ·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 · 등록 · 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· 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 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

7. 국제교류 및 협력

가. 국제기구 · 행사 · 대회의 유치 · 지원

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· 협력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